

토 론 문

청소년보호는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경화((사)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황 교수님의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인터넷게임 관련 규제들이 가족의 자율성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근거를 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가족의 자율성과 부모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인터넷게임에 관련한 국가의 규제조치를 꼼꼼하게 분석하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공부, 사회성 등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했던 시절에서 벗어나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이고, 두뇌를 파괴하는 유해 도구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뭘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올바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게임에 대한 정책결정자, 업계, 학계 등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제각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분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을 뿐 개인의 안녕, 가정의 화목, 사회의 질서, 나아가 국가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미디어는 항상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대접받아왔습니다. 한편으로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다른 한편으로 불신의 도구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TV의 경우 바보상자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채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등급부여, 시청지도 등을 만들어내어 방송을 끄라고 하기보다 부모에게 개입하여 자녀의 시청을 도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인터넷게임을 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인터넷게임을 건강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중 미디어의 속성을 반영한 방식의 조치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사전동의제도나 이용시간부모 고지제도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만합니다.

인터넷게임은 과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임입니다. 과거 미디어와는 확연히 다

른 특성들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 폭력이 물감으로 변질되는 게임 등을 보면서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사실과 허구가 혼동되는 등 청소년들은 건강한 사고체계를 유지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노는 게임의 이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교육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가족의 자율성이 보장되려면 인터넷 게임이 문화콘텐츠 소비임을 분명히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게임이 무엇이든,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한 분명한 사실은 국가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부모는 자녀 지도에 책임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 청소년은 성장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로 부모의 개입과 관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게임의 속성과 청소년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하면서 저는 황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궁금한 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인터넷게임이라는 매체는 영화, 비디오물과 같은 매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특정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게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타 매체와 비교하여 게임관련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모의 개입을 부모의 간섭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가정의 기능을 완전히 청소년들에게만 의존할 뿐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모와의 소통조차 거추장스러운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가정이라는 장소에서는 달리 해석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방임으로 자녀가 삶의 질에 위협을 느낄 경우 자녀는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부모로부터 겪을 수 있는 불합리성을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정책은 유행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보호정책이 과도하게 중독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미래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차원의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의 YP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동의제나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의 조치가 오히려 사업자들이

사업자 책무까지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려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 인터넷게임이용에 관한 개인정보가 사업자들의 데이터 마이닝 행위로 이어질까 우려가 됩니다.